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액화수소업체의 생산 차질에 대한 버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를 12월까지 상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1) 중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2026. 6. 26.〉”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2026. 9. 1.〉”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000원/kg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 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가연동보조금	나. 유가연동보조금
1) <u>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u> <u>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u> <u>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202</u> <u>6. 6. 26.> 결과에 따라 경유</u> <u>가격 및 천연가스(CNG) 가</u> <u>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u> <u>가연동보조금</u>	1) <u>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2026.</u> <u>9. 1.></u>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①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호나목의1)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 2023년 7월 11일부터 <u>2026년 9월 30일까지</u>	2. ----- ----- ---- <u>2026년 12월 31일</u> ---
3. 제3조제1호나목의2)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 2026년 5월 29일부터 <u>2026년 9월 30일까지</u>	3. ----- ----- ---- <u>2026년 12월 31일</u> ---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수소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보조금 : <u>5,000원/kg <단 서</u>	1. ----- ----- <u>5,000원/kg 다만,</u>

<u>신설></u> 2. (생 략) ⑤ ~ ⑥ (생 략)	<u>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000원/kg으로 적용한다.</u>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